

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943-01

*최종보고서*

#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연구기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림축산식품부

#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연구기관명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서 상 택

연구 원 : 정 우 석

연구 원 : 하 지 희



농림축산식품부



#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귀 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과제인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수행기간 : 2019. 10. 21 ~ 2019. 12. 19

2019년 12월 19일

연구기관명 :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 서 상 택(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연 구 원 : 정 우 석(충북대학교 농업과학기술연구소 박사후연구원)

연 구 원 : 하 지 희(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박사수료)



# 목 차

<b>제 I 장 서 론</b> .....	1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1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3
<b>제 II 장 국내외 회계기준의 변화와 농업회계기준의 추진경과</b> .....	8
제1절 국내외 회계기준의 변화 .....	8
가.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 .....	8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제정·개정 경과 .....	9
다. 농림어업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제정·개정 경과 .....	10
라. 중소기업회계기준 (2013.2.1. 제정, 2014.1.1. 시행) .....	11
제2절 농업회계기준의 추진경과 .....	13
가. 2004년 이전 .....	13
나. 「농업회계처리기준(시안)」 마련 .....	14
다. 「농업회계처리모범(례)」 (2006) 마련 .....	14
라. 농업회계기준(안) 마련 .....	15
마. 농업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16
<b>제 III 장 농업회계기준(지침)의 정합성 검토 및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b> .....	17
제1절 농업회계기준(지침)의 정합성 검토 .....	17
가. 검토의 기본 방향 .....	17
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	17
다. 생물자산 중 생산용 식물의 제외 여부 .....	19
라. ‘성숙-생물자산’ 의 정의 명확화 .....	19
마. 생물자산 중 내용연수가 짧은 생산용 생물자산의 재고자산 분류 .....	20
바. 미성숙-생물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	20



사.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의 추가 .....	21
아. 기타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21
제2절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	23
<b>제Ⅳ장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활성화 방안 .....</b>	<b>34</b>
제1절 농업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34
제2절 농업회계기록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	36
가. 농업회계전문위원회 구성 .....	36
나. 농업회계처리지침, 매뉴얼 및 사례 작성 .....	36
다. 농업회계교육 추진체계 .....	38
라. 농업회계기록의 제도화 .....	46
마.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농업회계기록 확대를 위한 업무 흐름도 .....	52
<b>참고문헌 .....</b>	<b>53</b>





## 표 목차

<표 II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경과 .....	9
<표 IV -1>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따른 장단점 비교 .....	41
<표 IV -2> 경북농업기술원 농업회계교육과정 .....	45
<표 IV -3> 충북농업기술원 농업회계교육과정 .....	45

## 그림 목차

[그림 IV -1] 농업회계기록 활성화 지원 체계 .....	34
[그림 IV -2] 농업회계처리지침, 회계처리매뉴얼 및 사례의 흐름도 .....	37
[그림 IV -3] 현행 농업회계교육 추진체계 .....	39
[그림 IV -4] 농업회계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	42
[그림 IV -5] 농업회계 교육과정 개설 예시 .....	44
[그림 IV -6] 농업회계시스템의 대출(보증)심사, 직접투자 활용 .....	47
[그림 IV -7] 농업회계 전문강사 및 농업경영 컨설턴트 육성 흐름도 .....	48
[그림 IV -8] 교육이수자 관리시스템 운영도 .....	49
[그림 IV -9] 농업회계시스템의 농업경영진단 및 컨설팅 활용방안 .....	51
[그림 IV -10]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흐름도 .....	52



#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제 I 장 서 론

제 II 장 국내외 회계기준의 변화와 농업회계기준의 추진경과

제 III 장 농업회계기준(지침)의 정합성 검토 및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제 IV 장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활성화 방안



## 제 I 장

# 서 론

### 제1절 연구배경과 목적

- 농업의 규모화, 자본화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농업 경영체의 합리적 의사결정 중요성 대두
  - 농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경영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경영체의 정확한 경영기록을 바탕으로 하는 농업회계 선행 필요
  - 농업회계의 기록 및 처리는 일정한 회계 처리기준에 의해 작성될 때 객관성, 투명성 및 비교 가능성 등 확보 가능
  
- 전문농업 경영인으로 육성 필요성이 있는 청년농 등의 농업회계관련 인식 전환 등 농업회계기준 도입 및 활용 여건이 성숙하는 중
  - 농업인의 경우 대부분 소득이 비과세\* 되는 등 회계장부 기록 및 관리에 대한 유인이 부족하여 회계기준 도입에 소극적이었으나,
    - \* (식량작물) 전액 비과세, (기타작물) 수입금액 10억원 이하 비과세, (축산) 부업 규모 이하 비과세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귀농인의 농장 경영분석, 회계지식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등 회계기준 마련에 대한 정책적 수요 증가
    - \* 농정원 교육생(청년농 183명, 예비 귀농인 81명) 대상 설문결과 청년농의 80.9%(147명), 예비 귀농인의 81.5%(6명)가 농장 경영 시 회계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다고 응답

## 2.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개발 보급되고 있으나,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아서 농업회계 관련 교육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 \* 농정원 ‘농업경영장부’, 충북농업기술원 ‘농가경영관리시스템’, 경북농업기술원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등
  
- 생물자산·수확물 등 농업부문의 회계처리 기준은 ‘공정가치’ 중심으로 자산을 인식·측정하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
  -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한 ‘공정가치’ 중심의 자산 평가방식은 농업현실과 괴리되고, 대기업용 회계처리 기준인 기업회계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경우 농업부문 규정이 없음
  
- 객관성, 통일성 확보 및 비교 가능한 농업회계 자료 작성 등을 위해서 ‘원가 중심’의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마련 및 보급 필요
  
- 농업경영의 합리화 또는 경영관리 기술 고도화를 위해서 농업회계의 선행이 필요하며, 중소기업회계기준의 경우에는 농업부문 규정이 없어 객관성, 통일성 확보 및 비교 가능한 농업회계 자료 작성 등을 위해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마련 및 보급 필요
  
- 연구목적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마련
  - 농업회계기준 보급 및 활성화 방안 마련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sup>1)</sup>

-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2004)와 농장회계길라잡이(농업회계 처리모범(례))(2007)
  - 기존 농업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회계처리실태를 문헌 및 관련기관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기업회계기준에 비추어 문제점을 도출함.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은 기업회계기준과 부합하도록 기본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업분야에 특수하게 적용될 수 있는 생물자산 등의 회계처리 방법과 재무제표의 작성에 필요한 계정분류방법을 다루고 있음.
  - 농림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2007년도에 “농업회계처리모범(례) 해설”을 발간하여 농업부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농업회계처리 지침을 보급하였음.
  
- 농업경영기록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012)
  - 농업경영기록 관련 선행연구, 현장에 보급되고 있는 경영기록장 수집 분석, 농업인 설문조사 등을 통해 농업인의 경영기록실태와 경영기록장 개선방안을 제시함.
  - 농업인 중 47%는 경영기록을 하고 있지 않았으며, 시간의 부족과 필요성의 부재가 주원인으로 조사됨. 농업법인의 경우 세무처리를 위해서 회계법인에 경영기록을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경영기록장은 작물과 축산으로 분류하되, 농업인의 작성편의와 경영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영농기록, 수확 및 판매일지, 경영기록(현금출납장, 외상매출 및 매입장, 자가소비 및 증여기록장, 재고 농산물 기록장, 농업소득집계표), 부록 등으로 구성함.

---

1) 서상택(2012)의 연구를 기초로 자료를 업데이트 함.



#### 4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 ○ 농업회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검토와 비교 연구(2008)

- 농림부의 “농업회계처리모범(례)”와 한국회계기준원의 “농림어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내용을 상호 비교 검토함.
- 회계처리와 공시에 있어서 “농업회계처리모범(례)”는 생물자산 또는 생산물(수확물)의 자산을 취득원가로 인식하는데 반해, 기업회계 기준서 제1041호는 생물자산의 최초 인식시점과 순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음. 수익인식 시점은 전자의 경우 인도시점인데 반해, 후자는 판매 전인 재화의 보유 및 생산 과정에서도 손익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음. 전자와 후자 모두 생산용 생물자산과 소비용 생물자산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되어 있으나 두 집단의 하위 표시에서는 용어상의 차이가 있음.

##### ○ 농업종합자금대출업무가이드(2007)

- “농업경영 회계기록”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 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 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를 개인의 경우에는 재무제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현금출납장, 경영장부, 영농 일지 등)를 말함.
- 법인·유통저장·관광농원·농촌가공·농기계생산·고품질우량종자개발·농기계 보관창고 사업자, 금융기관 총대출금이 5억원 이상인 개인의 경우 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함. 동일인당 종합자금 대출금이 1억원 이상으로 3개월 이상의 농업경영 회계기록(재무제표 또는 단식부기 장부)을 제출하지 않은 개인은 대출이 제한됨.

##### ○ 이영만의 연구(2002, 2003, 2004)

- 이영만은 일련의 연구에서 농업부기이용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농업회계기준의 제정, 부기이용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 제공, 간편한 부기방법 및 양식의 개발 등을 제안함(2002). 농업관련 통계자료가 기업회계기준에 근거하지 않고 오랜 관행에 근거함으로써 통계보고서의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지적하고 농업회계

기준 표준화의 기본방향을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중심으로 검토함(2003). 또한 농업분야에서 보급·활용되고 있는 회계관련 프로그램들을 검토하고 경영체의 특성에 따라 계정과목체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2004).

○ 농업경영 회계처리기준 설정(2004)

- 농촌진흥청의 공동연구로 실시되었으며,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농업분야에 회계처리방안을 제시함. 그러나 농업분야의 회계처리 관행이 여전히 적용됨으로써 수익인식기준, 생물자산의 분류, 농업경영 자금요소 비용 등에서 기업회계기준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발견됨.

○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2012)

- 농업경영체 회계처리 현황 및 현장 적용의 문제점을 분석함. 분석결과, 외감법 적용 농업법인경영체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나 일반기업 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었음. 기타 농업회사 법인이나 영농조합법인은 대부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었음. 반면, 농업종합자금을 신청한 농가는 재무제표 작성 비율이 3.2%에 불과했으며, 대부분 영농일지나 가계부를 기록하고 있었음.
- 기존 농업회계기준의 타당성을 국제회계기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중소기업회계기준 등과 정합성, 현실성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고, 농업부문의 관련법과의 정합성도 검토하였음. 타회계기준과의 일관성, 회계현실, 자료의 이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수정된 농업회계기준과 재무제표 표준(안)을 제시함.
- 또한 농업회계기준의 정책적 보급방안과 관련된 후속조치 및 연구과제 등의 추진을 제안함.

## 6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 ○ 농업회계 확대방안(2014)

- 농업회계기록의 실태와 문제점을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2012)」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농업회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을 분석함. 농업회계교육 및 프로그램은 농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농촌진흥청, 민간컨설팅회사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였으며, 농업회계교육의 일관성 및 통일성 부재, 농업회계기준 및 지침의 부재, 농업회계교육의 사후관리 부재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농업회계프로그램은 접근성 및 교육부재, 통일성 부족, 사후관리 및 컨설팅 부족 등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농업회계기록의 당위성에 대한 법적 근거 등 제도화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농업회계기록이 필요한 정책사업들에 대해 검토함. 제도화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으로 농업회계현실, 회계기록의 검증, 회계기록의 활용, 정부통계와의 연계성을 제시함.
- 농업회계확대방안으로 종합적인 접근방법과 세부적인 접근방법을 제시함.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제도적 지원, 교육과정 지원, 컨설팅 지원, 회계시스템 사후관리를 검토하였으며, 세부과제로는 농업회계 전문위원회 구성, 농업회계기준 및 사례집 작성, 농업회계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 개발, 농업회계기록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방안, 기관별 역할 분담방안 등을 제시함.

### ○ 농업회계 표준실무서(2014)

- 농업회계실무서는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2012)」에 기초하여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음. 또한,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에 기초한 농업회계의 계정과목을 정리하고, 분개와 결산 등의 회계처리방법을 제시함.

### ○ 식량(특용)작물 회계처리 사례(2015), 원예작물 회계처리 사례(2015), 축산분야(한우, 양돈, 양계) 회계처리 사례(2016)

- 이 연구들은 「농업회계 표준실무서(2014)」에 기초하여 식량(특

용)작물, 원예작물, 축산분야(한우, 양돈, 양계)에 대해 회계처리 시 유의해야 할 사항, 궁금한 사항, 그리고 실제 작목별 현장 영농 및 회계처리 내용을 기초로 회계처리 사례를 제시함.

○ 김성섭외(2017)

- 이 연구는 6차산업에 참여하는 농가의 회계처리 시 발생하는 쟁점 중 회계단위의 구분 여부 및 제조·가공 부문의 원료매입 기준과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쟁점을 검토하고 해소방안을 제시함. 첫째, 6차산업 농가는 생산과 제조·가공 단계를 통합하여 회계단위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둘째, 원재료 매입기준은 공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원재료 판매가격 획득이 어려운 경우에는 생산원가를 이용함.

○ 기타

- 이희숙외(2006), 양병우·이영만(2005), 이승형(1998), 권오욱(1992), 서상택·전익수(2014), 이상래·이철희·정병우·윤석곤·서상택(2015), 명수환·여민수·홍승지(2017), 방윤정·이상래(2018), 하지희·김성섭·김태후(2018) 등의 연구가 있음

○ 농업회계기준의 수립 및 현장 확산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선행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구속력 있는 기준(안)이 확정되지 않고 있음.

- 농업현장의 회계수요 대응,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농가경영개선 등을 위해 정부차원의 기준(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세부 회계처리 지침 등의 후속 작업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14년 개정된 국제회계기준 및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형태의 농업회계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제2장

# 국내외 회계기준의 변화와 농업회계기준의 추진경과

### 제1절 국내외 회계기준의 변화

#### 가.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00년에 국제회계기준 제41호(IAS 41) 농림어업(Agriculture)을 제정하였으며, 2003년 1월부터 시행함.
  
- 국제회계기준 제41호의 개정이 2014년 6월에 이루어졌으며, 주요 배경은 다음과 같음.
  - 성숙한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은 더 이상 유의적인 생물적 변환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공정가치 측정이 적절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비슷하므로 원가모형을 허용해야 함.
  - 시장이 없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측정비용, 복잡성, 실무적 어려움과 당기손익의 변동성이 우려됨.
  - 투자자, 재무분석가, 그 밖의 재무제표 이용자는 생산용 생물자산의 공정가치 변동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보고된 당기 손익을 수정하기도 함.
  - 이와 같은 배경 하에, IASB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후 생산용식물의 적용범위를 IAS 41 ‘농림어업’에서 IAS 16 ‘유형자산’으로 변경함.

#### 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 제정·개정 경과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제1041호 농림어업'은 2007년 11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 회계기준서 1041호를 준수하면 동시에 국제회계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됨.
- 이 회계기준서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외부감사 대상인 상장기업을 포함하여 이 기준을 선택하는 비상장기업도 희망하는 경우 2009년부터 조기 적용 가능함.

〈표 II -1〉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제·개정 경과

제정·개정 일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관련되는 국제회계기준
2014.12.12. 개정	농림어업: 생산용식물	Agriculture: Bearer Plants (Amendments to IAS 16 and IAS 41)
2008.11.28. 개정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Improvement to IFRSs
2007.11.23. 제정	농림어업	IAS 41 Agriculture

- 이 회계기준은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생물자산, 수확시점의 수확물, 정부 보조금에 적용하며, 농림어업활동과 관련된 토지와 무형자산은 이 회계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또한,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에 대해서는 수확시점에만 적용하며, 그 이후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02호 '재고자산'이나 적용 가능한 다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함.
- 이 회계기준서에서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과 매 보고기간말에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다만,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함. 이후 그러한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게 되면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생물자산에서 수확된 수확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순공정가치로 측정함.

○ 국제회계기준의 변경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도 생산용생물자산의 적용범위를 ‘농림어업’에서 ‘유형자산’으로 재분류함.

－ 따라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생물자산의 적용범위가 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제외한 생물자산으로 축소됨.

－ 그러나 생산용식물에서 자라는 생산물은 생물자산으로 정의되며, 이 회계기준서를 적용함.

#### 다. 농림어업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 제정·개정 경과

○ 농림어업 관련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제27장 ‘특수활동’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는 2009년 11월 27일에 제정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 이 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선택하지 않은 일반기업(비상장기업)에게 적용되며, 적용범위로 (1)생물자산, (2)수확시점의 수확물, (3)생물자산과 관련된 정부보조금을 포함하고 있음.

○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 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수확물은 공정가치로 측정함. 단, 수확물의 공정가치를 신뢰성있게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원가로 측정함. 인식시점 이후의 생물자산은 순공정가치법과 원가법 중 선택하여 적용하며, 원가법을 선택한 경우 ‘유형자산’에 따라 원가모형으로 측정함.

라. 중소기업회계기준 (2013.2.1. 제정, 2014.1.1. 시행)<sup>2)</sup>

-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통령 주재 대·중소기업 동반성장대책회의(2010.9.29.)에서 중소기업이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의 제정 추진을 발표하였고, 24개 중소기업단체와 유관기관이 참여한 ‘중소기업 투명경영확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한 결과, 2011.11월 ‘중소기업 자율회계지침(안)’을 발표
- 법무부는 2012년 4월 개정 상법 및 시행령이 발효됨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주식회사에 적용할 회계기준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적합한 회계기준 제정을 추진
  - － 「상법」 제4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호
- 법무부 내에 구성된 회계자문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 및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 중소기업회계기준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 2013년 2월 1일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법무부고시 제2013-0029호)
- 제정원칙
  - － 일반기업회계기준과의 일관성을 기초로 하되, 회계정보의 유용성을 크게 떨어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처리의 단순화와 법인세법 등과의 조화를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제정
  - －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주식회사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교적 규모가 작은 회사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래 등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을 중심으로 구성

2) 법무부·한국회계기준원, 「중소기업회계기준 해설」, 2013. 3. 29를 참조하여 작성



## 12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 ○ 회계정책의 선택

-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참조하여 회계처리

### ○ 목차

- 총 10장 + 부칙
- 총칙,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부채의 평가, 자본거래, 특수거래, 자본변동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및 결손금처리계산서, 주식, 부칙

### ○ 농업관련 주요 내용

- 자산은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제36조)
-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또는 제조원가를 말함(제37조 제1항)
-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구입가격 또는 제작원가와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직접 관련된 원가를 포함하며, 매입에누리, 매입할인과 매입환출을 차감하는 금액을 말함(제38조 제1항)
- 최초 인식 후에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은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결정(제38조 제3항의 1)

## 제2절 농업회계기준의 추진경과

### 가. 2004년 이전<sup>3)</sup>

- 2000년 9월 농업금융개혁위원회에서는 농업투융자 측면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업금융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발표
  - － 세부내용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농기업 회계준칙」 제정을 중기과제로 추진하기로 함
  
- 2001년 3월에 농림부에서 “농업금융개혁 추진방안”을 발표
  - － 표준화된 「농기업회계준칙」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2002년 이후에 회계사, 농업 전문가 그룹에 연구용역을 발주한다는 내용을 포함
  
- 한국회계기준원에서는 농업분야 회계처리기준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농업계의 요구에 공감하고 2004년 5월 농업분야의 회계준칙인 가칭 「농어업기준서」 초안 마련을 위한 기초토론회를 개최
  - － 토론회 결과, 한국회계기준원은 국제농업회계기준과 농업현장에서 관습적으로 처리되어온 관행과의 차이가 큰 점을 인식하고 2005년 12월까지 농림어업을 비롯한 금융업, 보험업 등 특수분야 및 업종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를 연차적으로 수립해 나가기로 결정
  - － 그러나 이후 회계기준원은 「농어업기준서」의 제정이 타 분야만큼 시급하지 않다고 판단함
  
- 농림부는 2004년 6월 25일 개최된 경제장관간담회시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농업경영체의 활성화와 경영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3) 농림부 발행의 「농업회계처리모범(례)」(2006)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과제로 농업경영에 필요한 회계처리방안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전업농과 농업법인이 경영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한다는 내용을 보고

#### 나. 「농업회계처리기준(시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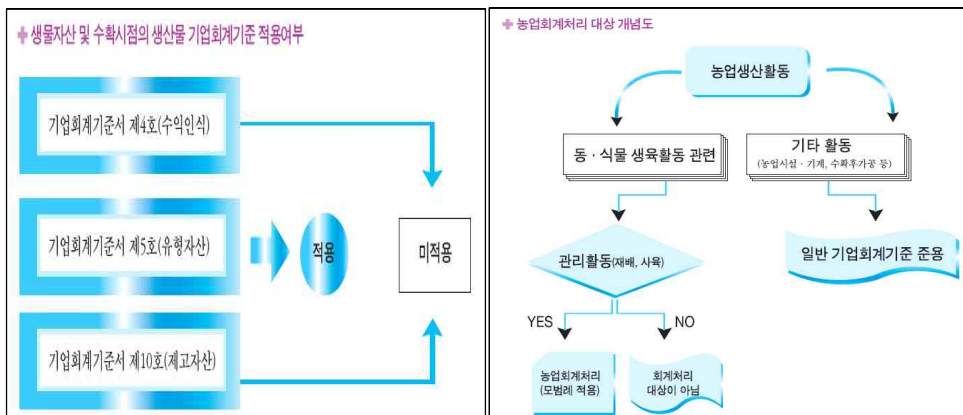
- 농림부는 2004년도와 2005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농업회계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 － 2004년도에는 농업회계처리 대상의 범주와 농업계에서의 회계처리 실태를 분석하고 국제농업회계기준(Agriculture 41) 내용의 조문을 분석하는 등 표준농업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
  - － 2005년도에서는 2004년도 보고된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결과 중 수확물과 생물자산에 대한 농기업의 회계처리내역과 농업대학 및 농촌진흥청의 서로 다른 회계처리방식을 검토하고 생물자산에 대한 표준화된 회계처리방법 및 표준재무제표와 계정별 회계처리방법을 연구함

#### 다. 「농업회계처리모범(례)」 (2006) 마련

- 정부는 「농업회계처리기준(시안)」을 토대로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항목과 내용이 무엇인지 확정하기 위해 2005년도에 대학교수, 회계사, 정부공무원,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
  - － T/F팀에서는 제안된 농업회계처리 표준안을 토대로 「농업회계처리 모범(례)」 시안을 확정하고, 동 내용을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와 농업인단체에게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침
- 「농업회계처리모범(례)」는 종전의 기업회계기준(K-GAAP)에서 정하지 않은 농업분야의 회계처리방법과 기준을 다루고 있음. 이는 기업회계기준의 틀 안에서 회계기준과 회계처리방법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회계기준에 부합

하는 회계처리기준이라고 할 수 있음.

- 「농업회계처리모범(례)」의 목차
  - 서론
  - 농업회계처리 기준안 제정
  - 조문내용 및 해설
  - 회계처리 사례 : 벼, 과수, 인삼, 양돈
  - 부록
  
- 농업회계처리의 대상 및 기업회계기준 적용 여부



자료 : 농림부, 「농업회계처리모범(례)」, 2006.12.

### 라. 농업회계기준(안) 마련

- 2012년도에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도에 발간된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2011년부터 시행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및 일반기업회계기준, 그리고 2013년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던 중소기업회계기준(안)과의 정합성과 법적 근거에 기초하여 재정비함.
  - 농업회계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

(안)이 확정될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중소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 적용할 것을 제안

- 한편, 농업회계기준만을 별도로 정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회계기준에 익숙하지 않은 농업 관련자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용자의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소기업회계기준(안)에 부가적으로 수정·보완된 「농업회계처리모범(례)」를 첨가하는 형태의 농업회계기준(안)도 제시

#### 마. 농업회계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 2014년도에 농촌진흥청은 농업현장, 대학, 농업교육기관에서 각자 다른 회계기준과 처리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농업회계교육은 물론 현장 확산에 혼란이 있음을 인지하고, 농업회계가이드라인을 마련
  - 농업회계가이드라인은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의 보고서를 기초로 한국회계기준원, 공인회계사 등의 자문을 받아 마련하였음
  - 또한, 농업회계가이드라인에 기초해서 농업회계의 계정과목을 분류하고 회계처리사례를 제시하였으며, 별첨 양식으로 생산원가명세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를 제시함

## 제3장

# 농업회계기준(지침)의 정합성 검토 및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 제1절 농업회계기준(지침)의 정합성 검토

#### 가. 검토의 기본 방향

-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및 법적 근거 검토
- 자산의 성격 및 중요성, 자료의 이용가능성, 정보의 유용성, 회계작성자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검토
- 기 활용 중에 있는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검토

#### 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

- 농업회계기준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농업회계기준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농업회계 기준 제정에 당위성을 부여함.
  - 다만, ‘농업회계기준’ 이라는 용어가 농업부문을 대표하는 업종별 회계기준이라는 의미를 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용어의 선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이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1호(농림어업)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7장 ‘특수활동’에서 농업부문의 회계기준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새로운 농업회계기준의 제정이 타 회계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농업회계기준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용어를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회계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비교할 때 회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기업의 규모에서 차별성이 있음. 즉, 중소기업회계기준은 용어 자체에서 중소 규모의 기업에 적용되는 기업회계기준임을 인식할 수 있음.
- 따라서, 법률과의 정합성 및 기업의 규모를 기준으로 제정된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농업회계기준의 명칭을 “농업(경영체)회계기준”으로 정함.

[ 목적 ]

1.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이하 ‘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 경영체의 농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회계기준과 같이 적용범위에 법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이 타 법률 및 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함.

[ 적용범위 ]

2. 이 회계기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생물자산과 수확물 및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경영체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다. 생물자산 중 생산용 식물의 제외 여부

- 개정(2014년)된 국제회계기준 제41호(농림어업) 및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41호(농림어업)에서는 생물자산 중 생산용식물을 생물자산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유형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 반면,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는 생산용식물을 생물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음.
  - － 농업(경영체)회계기준도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마찬가지로 생산용식물을 생물자산의 범주에 포함시킴. 이는 생산용식물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을 생물자산으로 분류하는 등 기준서의 이용에 따른 불편성이 크기 때문임.

#### 라. ‘성숙-생물자산’의 정의 명확화

-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에서는 ‘성숙-생물자산’을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생산 활동을 할 수 있는 생물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또한, ‘미성숙-생물자산’을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으로 정의하고 있음.
  - － 이 정의에서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이라는 표현이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정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대체하여 사용함.

#### [ 용어의 정의 ]

- (라) ‘성숙-생물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정상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
- (마) ‘미성숙-생물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정상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마. 생물자산 중 내용연수가 짧은 생산용 생물자산의 재고자산 분류

-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에서는 내용연수가 비교적 짧은 생산용 생물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형자산으로 정의되는 자산을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자산의 분류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할 필요가 있음.

[ 생물자산과 수확물 분류 ]

- 7. 생산용 생물자산 중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바. 미성숙-생물자산에 대한 손상차손 인식

- 성숙-생물자산의 경우 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측정하는데, 미성숙-생물자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따라서 농업(경영체)회계기준에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킴.

[ 자산의 인식과 측정 ]

10. ---

- (가) 유형자산에 속하는 미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 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또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측정한다.

(나)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수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성숙-생물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다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측정한다.

사. 정부보조금에 대한 정의 추가

-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은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 조건을 포함하고 있으나 용어의 정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회계기준의 완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보조금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에서는 정부보조금의 수익인식에 대한 조건으로 ‘수취할 것이라는 확신’을 ‘지불 통지를 받은 날’로 명시함으로써 자의적 해석을 방지하고, 현장 적용가능성을 높였음.

[ 용어의 정의 ]

(자) ‘정부보조금’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농업경영체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아. 기타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 농업회계 가이드라인 중 중소기업회계기준과 중복되는 규정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2조의 적용범위를 근거로 삭제함.

[ 적용범위 ]

2. 이 회계기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생물자산과 수

확물 및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경영체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제2절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 기존 농업회계가이드라인, 관련 법률 및 타 회계기준과의 정합성 검토, 전문가 자문, 중앙부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마련한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은 다음과 같음.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안)

**제1조(목적)**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이하 ‘이 회계기준’이라 한다)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라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에 대한 회계처리에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이 회계기준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생물자산과 수확물 및 정부보조금의 회계처리에 적용한다. 다만, 농업경영체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회계기준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 제3조(용어의 정의)

- ①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 ② ‘농업활동’이란 농업경영체가 판매를 목적으로 생물자산에서 생산물을

수확하거나 다른 생물자산으로 형질을 변환하는 관리활동을 말한다.

- ③ ‘생물자산’이란 살아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말한다. 생물자산은 주된 용도에 따라 생산물을 생산하는 ‘생산용 생물자산’과 생물자산 그 자체로서 최종 생산물이 되거나 판매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으로 구분한다.
- ④ ‘성숙-생물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정상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생물자산을 말한다.
- ⑤ ‘미성숙-생물자산’이란 내용연수가 1년을 초과하는 생산용 생물자산 가운데 정상적으로 수확물을 산출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지 못한 생물자산을 말한다.
- ⑥ ‘수확’은 생물자산에서 수확물의 분리 또는 생물자산의 성장과정의 중지를 말한다.
- ⑦ ‘수확물’은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생산물을 말한다.
- ⑧ ‘생물적 변환’은 생물자산에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일으키는 성장, 퇴화, 생산 그리고 생식과정으로 구성된다.
- ⑨ ‘정부보조금’은 농업경영체의 농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였거나 충족할 경우 농업경영체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지원금을 말한다.

#### 제4조(생물자산과 수확물 분류)

- ① 생물자산을 생산하기 위하여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생산용 생물자산은 유형자산으로 분류한다.

- ② 유형자산 중 생산용 생물자산이 그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대차대조표의 유형자산 중에 ‘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하고, 원래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거나 재배하는 과정에 있는 경우에는 ‘미성숙-생물자산’으로 분류한다.
- ③ 수확물과 소비용 생물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 ④ 생산용 생물자산 중 내용연수가 단기이고 수량이 많아 개체관리가 어려운 자산은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다.
- ⑤ 대차대조표에 재고자산으로 분류되는 소비용 생물자산이 성장 중인 경우에는 ‘생장물’로 분류하고 수확 시점 이후에는 ‘수확물’로 분류한다. 다만, 축산농가의 경우 ‘수확물’을 ‘생산물’로 표시한다.

#### 제5조(자산의 인식과 측정)

-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산으로 인식한다.
  - 1.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농업경영체가 통제한다.
  - 2.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에서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다.
  - 3.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 ② 생물자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한다. 생물자산의 원가는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운반비,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포함한 구입금액으로 측정하고 최초 인식시점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1. 유형자산에 속하는 미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 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또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측정한다.
  2.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수확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성장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했을 경우 원가에서 차감한다. 성숙-생물자산으로 인식한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차감하여 측정한다. 다만, 손상이 발생한 경우 차감하여 측정한다.
  3. 유형자산에 속하는 성숙-생물자산의 감가상각은 해당 생물자산의 성숙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성숙시점은 짓소의 경우 첫 출산 시, 번식용 가축의 경우 첫 출산을 위한 교배시, 다년생 식물의 경우 수확물의 수익과 비용이 거의 같아지는 연도로 한다.
  4. 재고자산에 속하는 성장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매 보고기간 말에 성장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 ③ 생물자산에서 수확한 수확물의 원가는 생물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후 수확이 완료될 때까지 성장 및 수확과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발생한 직접원가와 간접원가를 가산한 금액으로 측정한다.

**제6조(수익의 인식)**

- ① 생물자산이나 수확물을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을 권리를 갖게 되었을 때 수익을 인식한다.
- ② 정부보조금의 경우 지불 통지를 받은 날 수익을 인식한다.

**제7조(비용의 인식)** 특성에 따라 수익에 대응시켜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8조(생산원가명세서)**

- ① 농업활동의 매출원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손익계산서의 부속명세서로 생산원가명세서를 작성할 수 있다.
- ② 당기수확물의 생산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생산경비로 구분하여 집계한 당기 총생산원가에서 기초생장물재고액을 가산하고 기말생장물재고액과 다른 계정 대체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생산원가명세서의 양식은 ‘별표1’ 과 같다.
- ③ 경영주 노임, 자기자본, 자기토지에 대한 기회비용은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재무제표)**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의 양식은 ‘별표2, 별표3’ 과 같다.



28 농업회계기준(지침)에 대한 연구

--

[별표1] 생산원가명세서 양식

**생산원가명세서**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회사명(농장명) :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b>I. 재료비</b>		XXX		XXX
1. 기초재료재고액	XXX		XXX	
2. 당기재료매입액	XXX		XXX	
계	XXX		XXX	
3. 기말재료재고액	XXX		XXX	
<b>II. 노무비</b>		XXX		XXX
1. 급여	XXX		XXX	
2. 고용비	XXX		XXX	
3. 잡급	XXX		XXX	
4. 퇴직급여	XXX		XXX	
.....				
<b>III. 생산경비</b>		XXX		XXX
1. 광열동력비	XXX		XXX	
2. 비료비	XXX		XXX	
3. 농약비	XXX		XXX	
4. 포장비	XXX		XXX	
5. 약품비	XXX		XXX	
6. 진료위생비	XXX		XXX	
.....	XXX		XXX	
<b>IV. 당기총생산원가</b>		XXX		XXX
<b>V. 기초생장물재고액</b>		XXX		XXX
<b>VI. 합계</b>		XXX		XXX
<b>VII. 기말생장물재고액</b>		XXX		XXX
<b>VIII. 타계정으로대체액</b>		XXX		XXX
<b>IX. 당기수확물(생산물)생산원가</b>		XXX		XXX

[별표2] 대차대조표 양식

**대차대조표**

제x기 20xx년 x월 x일 현재  
 제x기 20xx년 x월 x일 현재

회사명(농장명) :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b>자 산</b>				
<b>유동자산</b>		XXX		XXX
<b>당좌자산</b>		XXX		XXX
현금및현금성자산	XXX		XXX	
단기투자자산	XXX		XXX	
매출채권	XXX		XXX	
(-) 대손충당금	(XXX)		(XXX)	
선급비용	XXX		XXX	
미수수익	XXX		XXX	
미수금	XXX		XXX	
(-) 대손충당금	(XXX)		(XXX)	
선급금	XXX		XXX	
.....	XXX		XXX	
<b>재고자산</b>		XXX		XXX
수확물(생산물)	XXX		XXX	
생장물	XXX		XXX	
원재료	XXX		XXX	
저장품	XXX		XXX	
.....	XXX		XXX	
<b>비유동자산</b>		XXX		XXX
<b>투자자산</b>		XXX		XXX
투자부동산	XXX		XXX	
장기투자증권	XXX		XXX	
장기대여금	XXX		XXX	
.....	XXX		XXX	
<b>유형자산</b>		XXX		XXX
토지	XXX		XXX	
건물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영농시설물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대농기구	XXX		XXX	
(-) 정부보조금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차량운반구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건설중인자산	XXX		XXX	
성숙-생물자산	XXX		XXX	
(-) 감가상각누계액	(XXX)		(XXX)	
미성숙-생물자산	XXX		XXX	
.....	XXX		XXX	
<b>무형자산</b>		XXX		XXX
지식재산권	XXX		XXX	
개발비	XXX		XXX	
컴퓨터소프트웨어	XXX		XXX	
임차권리금	XXX		XXX	
영업권	XXX		XXX	
.....	XXX		XXX	
<b>기타 비유동자산</b>		XXX		XXX
임차보증금	XXX		XXX	
장기매출채권	XXX		XXX	
장기선급비용	XXX		XXX	
장기미수금	XXX		XXX	
.....	XXX		XXX	
<b>자산총계</b>		XXX		XXX
<b>부 채</b>				
<b>유동부채</b>		XXX		XXX
단기차입금	XXX		XXX	
매입채무	XXX		XXX	
미지급법인세	XXX		XXX	
미지급비용	XXX		XXX	
미지급금	XXX		XXX	
선수금	XXX		XXX	
선수수익	XXX		XXX	
예수금	XXX		XXX	
유동성장기부채	XXX		XXX	
.....	XXX		XXX	
<b>비유동부채</b>		XXX		XXX
장기매입채무	XXX		XXX	

사채	XXX		XXX	
장기차입금	XXX		XXX	
퇴직급여충당부채	XXX		XXX	
.....	XXX		XXX	
<b>부채총계</b>		XXX		XXX
<b>자</b>				
<b>본</b>				
<b>자본금</b>		XXX		XXX
보통주자본금	XXX		XXX	
우선주자본금	XXX		XXX	
<b>자본잉여금</b>		XXX		XXX
주식발행초과금	XXX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XXX	
감자차익	XXX		XXX	
.....	XXX		XXX	
<b>자본조정</b>		XXX		XXX
주식할인발행차금	XXX		XXX	
자기주식	XXX		XXX	
자기주식처분손실	XXX		XXX	
감자차손	XXX		XXX	
.....	XXX		XXX	
<b>이익잉여금(또는 결손금)</b>		XXX		XXX
법정적립금	XXX		XXX	
임의적립금	XXX		XXX	
미처분이익잉여금	XXX		XXX	
(또는 미처리결손금)				
<b>자본총계</b>		XXX		XXX
<b>부채 및 자본 총계</b>		XXX		XXX

이 대차대조표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별표3] 손익계산서 양식

손익계산서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제x기 20xx년 x월 x일부터 20xx년 x월 x일까지

회사명(농장명) : (단위 : 원)

과 목	제x(당)기		제x(전)기	
	금	액	금	액
<b>매출액</b>		XXX		XXX
<b>매출원가</b>		XXX		XXX
기초수확물(생산물)재고액	XXX		XXX	
당기수확물(생산물)생산원가	XXX		XXX	
기말수확물(생산물)재고액	XXX		XXX	
<b>매출총이익(매출총손실)</b>		XXX		XXX
<b>판매비와 관리비</b>		XXX		XXX
급여	XXX		XXX	
퇴직급여	XXX		XXX	
복리후생비	XXX		XXX	
임차료	XXX		XXX	
접대비	XXX		XXX	
감가상각비	XXX		XXX	
무형자산상각비	XXX		XXX	
세금과공과	XXX		XXX	
광고선전비	XXX		XXX	
연구비	XXX		XXX	
경상개발비	XXX		XXX	
대손상각비	XXX		XXX	
.....	XXX		XXX	
<b>영업이익(또는 영업손실)</b>		XXX		XXX
<b>영업외수익</b>		XXX		XXX
이자수익	XXX		XXX	
배당금수익	XXX		XXX	
임대료	XXX		XXX	
단기투자자산처분이익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이익	XXX		XXX	
외환차익	XXX		XXX	
외화환산이익	XXX		XXX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환입	XXX		XXX	
유형자산처분이익	XXX		XXX	
사채상환이익	XXX		XXX	
전기오류수정이익	XXX		XXX	
.....	XXX		XXX	
<b>영업외비용</b>		XXX		XXX
이자비용	XXX		XXX	
기타대손상각비	XXX		XXX	
단기투자자산처분손실	XXX		XXX	
단기투자자산평가손실	XXX		XXX	
재고자산감모손실	XXX		XXX	
외환차손	XXX		XXX	
외화환산손실	XXX		XXX	
기부금	XXX		XXX	
장기투자증권손상차손	XXX		XXX	
유형자산처분손실	XXX		XXX	
사채상환손실	XXX		XXX	
전기오류수정손실	XXX		XXX	
.....	XXX		XXX	
<b>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b>		XXX		XXX
<b>(또는 법인세비용차감전순손실)</b>				
<b>법인세비용</b>		XXX		XXX
<b>당기순이익 (또는 당기순손실)</b>		XXX		XXX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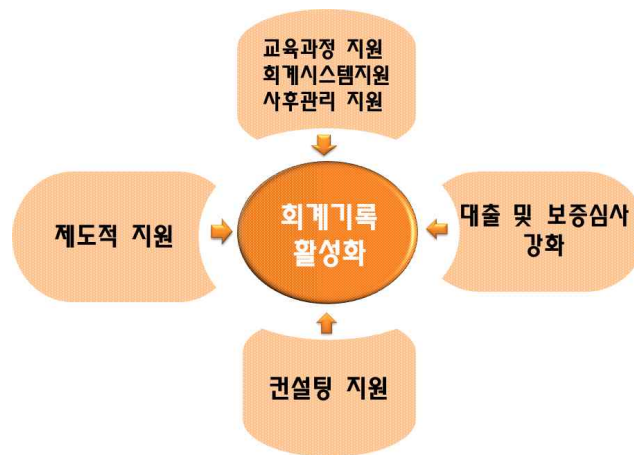
이 손익계산서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및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 제4장

#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활성화 방안<sup>4)</sup>

### 제1절 농업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접근

- 농업회계기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회계기록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체감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함.
- － 구체적으로 제도적 지원, 교육과정 지원, 회계시스템 지원, 사후관리 지원, 대출 및 보증심사 강화, 컨설팅 지원 등 회계기록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체계적·유기적으로 지원될 때 가능함(그림 IV-1).



<그림 IV-1> 농업회계기록 활성화 지원 체계

4) 농업회계확대방안(2014)을 수정·보완하였음.



- 이 기능들은 특정 기관에서 전담하기보다는 전문 기관별로 역할을 구분하여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구체적으로 정부기관, 교육기관, 금융기관, 컨설팅 기관으로 구분하여 역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정부기관은 농업(경영체)회계기준 제정, 농업회계처리지침 작성, 회계기록 제출 의무 확대, 회계기록 검증 및 관리기관 지정, 회계기록자 우대 정책,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등을 담당해야 할 것임.
  - － 교육기관은 농업회계교육 추진계획의 수립, 수준별 농업회계 교육과정 개설, 전문강사 및 컨설턴트 양성, 교육이수자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농촌진흥기관, 농과계 대학 등이 농업회계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음.
  - － 금융기관은 농협이나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과 같은 대출 및 보증기관을 말하며, 회계자료의 요구 및 검증, 회계자료에 근거한 대출 및 보증심사, 우대정책 등을 담당해야 할 것임. 특히, 정부정책자금과 관련한 지원에 의무조건이 부과되면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됨.
  - － 컨설팅 기관은 농업회계 및 농업경영컨설팅을 지원하는 세무사, 회계사 등이 포함된 민간 기관으로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및 지침에 근거해서 회계처리를 하거나 필요에 따라 전문강사 또는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해야 할 것임. 정부기관 중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담당 연구사 및 지도사들도 일정한 회계교육과정 이수 후 컨설턴트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제2절 농업회계기록 확대를 위한 세부 과제

### 가. 농업회계전문위원회 구성

- 농업회계전문위원회는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정착 및 농업회계기록의 확대를 위한 중요 사안들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전체위원회와 소위원회로 구성함
  - － 전체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학계, 생산자단체, 회계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고시 등에 대한 업무를 심의
  - － 소위원회는 농업회계처리지침 관련 업무, 농업회계교육의 확대를 위한 추진계획, 교육과정개발, 농업회계 활성화를 위한 제도화 관련 사항, 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 기관 간 업무 조정 등 실무적인 관점의 업무를 심의

### 나. 농업회계처리지침, 매뉴얼 및 사례 작성

-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은 포괄적인 관점에서 생물자산의 분류, 생물자산과 수확물의 인식과 측정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음.
- 농업회계처리지침은 농업(경영체)회계기준에 근거해서 구체적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으며, 농업(경영체)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농업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농업회계처리지침은 실제 회계사례를 처리함에 있어 모호하거나 객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체성을 부여하는데 의미가 있음. 이를 통해 회계처리의 통일성, 객관성, 비교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임.

- 필요할 경우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부분과 작물 분야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부분으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작성된 농업회계처리 지침은 농업회계전문위원회 소위원회를 통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농업회계처리지침은 현장에서 새로운 회계사례가 발생할 경우 빈도와 중요도를 감안하여 지속적으로 수정·보완하고, 교육기관 및 농업회계프로그램, 농업경영체에 신속하게 전파하여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유지토록 해야 할 것임.
- 농업회계처리 매뉴얼은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및 농업회계처리지침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 거래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농업회계프로그램과 사례중심으로 작성될 필요가 있음.
-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존의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에 따라 계정을 구분하고, 작목 부류별로 대표작목에 대한 회계처리사례집을 발간하여 활용 중에 있음. 뿐만아니라 표준실무서를 작성하여 거래에 따른 회계처리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일련의 노력들이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해야 함. 즉, 농업인의 관심을 유도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농업회계시스템(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매뉴얼을 작성하며, 이론 중심이 아닌 활용성에 중점을 두고 작성될 필요가 있음.
  - 필요할 경우 농업인용과 강사용(컨설턴트용)을 구분하여 작성함으로써 수준별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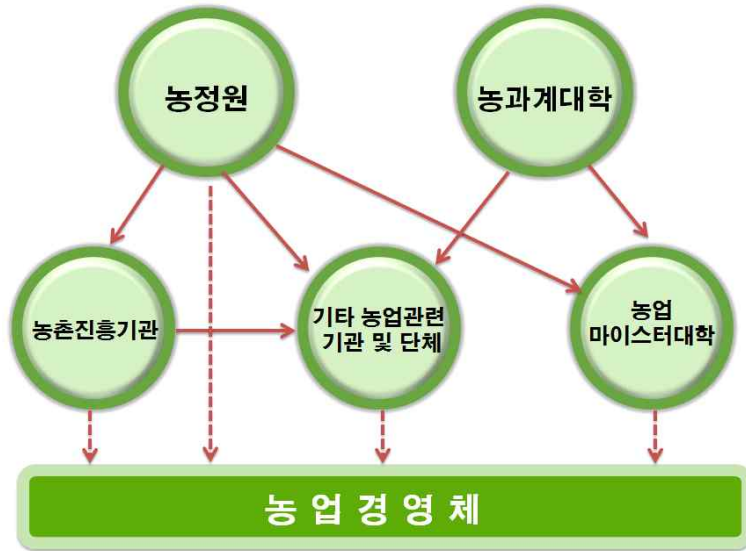


<그림 IV-2> 농업회계처리지침, 회계처리매뉴얼 및 사례의 흐름도

## 다. 농업회계교육 추진체계

### 1) 현행 교육추진체계

- 농업회계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전국 농과계 대학, 기타 농업관련기관 및 단체로 분류됨. 이 중 농업경영체의 교육을 직접 주관하는 기관은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기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임(그림 IV-3).
  - － 농정원은 청년창업농을 대상으로 의무교육과정인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후계농에 대한 농업회계교육도 담당하고 있음. 이 때 농정원의 회계프로그램에 익숙한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고 있음. 지자체들도 청년 창업농들의 회계기록 제출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역량강화 차원에서 농정원의 농업회계프로그램 활용하여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하기도 함.
  - － 농업마이스터대학은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하지만 농정원 전문가, 농과계대학 전문가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기타 농업관련 기관 및 단체는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함.
  - － 농촌진흥기관은 자체 강사나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함. 최근 들어, 경북농업기술원과 충북농업기술원은 자체 개발한 농업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준별 농업회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 일부 농업기술원을 제외하면, 농업회계교육은 수준별 교육이 아니라 일회성 또는 단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사후관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그림 IV-3> 현행 농업회계교육 추진체계

- 농업회계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이 선행적으로 준비될 필요가 있음. 그 동안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 PC기반과 웹기반 등 기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었음.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통일성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연계를 기대할 수 없었음.
- 경북과 충북 도 농업기술원에서 활용중인 복식부기 기반(단식부기 가능)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은 이미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활용중에 있음. 농정원의 복식부기 기반의 농업회계프로그램 개발이 완료되면, 기관간 업무협조체계 구축을 통해 농업회계교육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인력과 예산의 절감, 교육효과의 극대화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 2) 개선방안

### 가) 농업회계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 현재 농정원은 청년창업농 및 후계농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복식부기 기반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음. 기 활용중인 단식부기 기반의 농업경영장부는 회계처리방식의 차이로 인해 호환성의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신규로 진입하는 청년창업농이나 후계농들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또한, 일반 농업인이나 농업법인도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단위에서 통일성 있는 농업회계프로그램의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다만, 전국적 조직망의 부재로 사후관리가 어렵고 전문성을 갖춘 다수의 컨설턴트를 활용할 수 없는 단점이 있음. 또한 사용자들의 입력 자료를 검증하고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없어 축적된 데이터의 활용가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음.
  
- 도 농업기술원(충북, 경북, 제주)은 이미 복식부기 기반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을 활용 중에 있음. 각 도별로 약간의 차별성은 가지고 있으나, 농진청의 농업회계 가이드라인을 기초로 계정을 분류하고 복식부기 방식(단식부기 가능)으로 회계처리를 하기 때문에 호환성이 높음. 또한, 영농일지가 함께 제공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인 제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농촌진흥기관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조직으로 농업연구 및 농촌 지도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농업경영체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다양한 농업경영컨설팅 및 정책지원사업까지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음. 반면, 웹에 기반한 농업회계프로그램과 농업회계교육을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단점이 있음. 이 부분은 각 도 및 시군에 속한 경영담당 연구사 및 지도사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함으로써 일정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판단됨.

- 반면, 농업회계프로그램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이 매년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확보의 문제가 있고, 농정원과 유사한 농업회계프로그램의 운용에 따른 예산의 중복투입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소수의 전담인력으로 인해 새로운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표 IV-1>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따른 장단점 비교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장점	전국적인 조직망 구축 복식부기 기반의 회계프로그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경험 작목 및 경영체 접근 용이 수요자와 친밀한 유대관계 유지 경영담당 연구사 및 지도사를 전담강사로 양성 가능 컨설팅과 연계 가능 지자체 협조 용이 교육생 사후관리 가능	단식부기 기반의 농업회계프로그램 운영 경험 복식부기 기반 농업회계프로그램 개발로 전국단위 활용 가능 농업회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용이함
단점	회계 전문인력 부족 농업용 회계프로그램의 유지 관리에 전담 인력과 비용 소요 농업회계 프로그램의 수정·보완이 불편함	전국적인 조직망 부재 교육생 사후관리 어려움 회계 전문인력 부족 데이터 검증 및 활용성이 낮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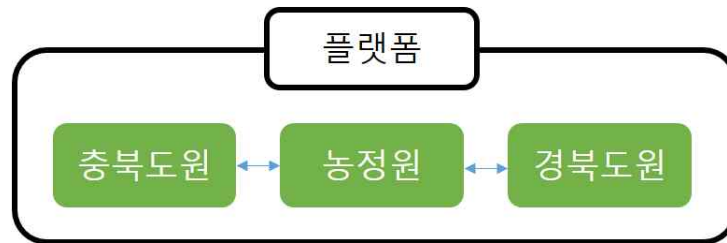
○ 향후 농정원의 복식부기 기반 농업회계프로그램과 도 농업기술원의 농업회계 프로그램 간의 관계설정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됨.

- 농정원의 농업회계프로그램은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전국단위에 적용될 수 있는 반면, 도 농업기술원의 회계프로그램은 지자체 예산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적용범위가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음. 물론, 일부 지자체는 공간적인 제약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사후 관리에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불편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예를 들어, 농정원의 농업회계프로그램으로 기초 과정을 이수한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도 농업기술원에서 다음 단계의 교육을 이수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임. 이는 자료의 입력 및 처리 방식, 분석결과의 활용범위, 교육내용의 일관성 등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임.

- 교육강사 및 컨설턴트의 양성과 관리, 교육 이수자 사후관리 등에서 일관성과 체계성이 부족하고, 예산의 중복 투입이 예상됨.

- 현 상태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은 농업회계프로그램을 통합하는 방안과 현 시스템을 유지하되 정보의 공유를 하는 플랫폼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음. 각 기관별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 쟁점에 대해 논의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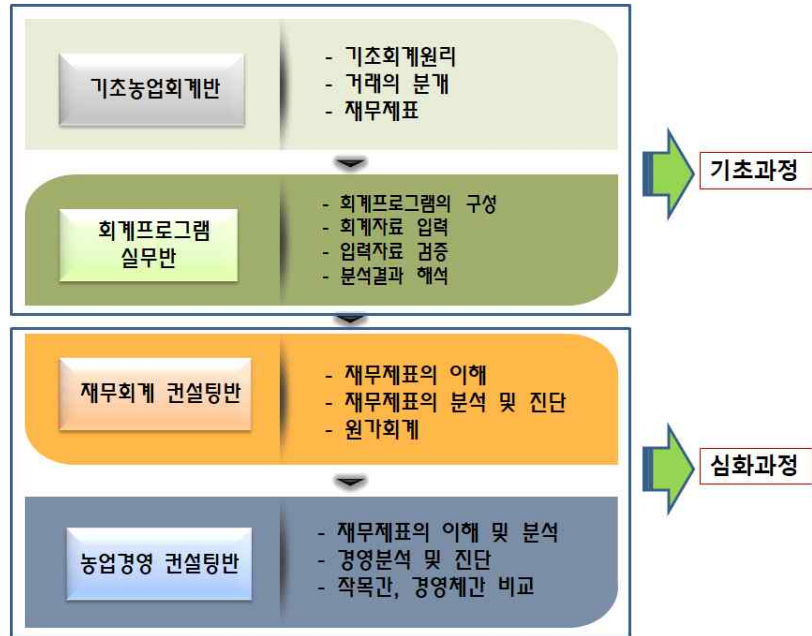
<그림 IV-4> 농업회계프로그램 플랫폼 구축

#### 나) 교육과정의 개설

- 농업회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은 크게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농업마이스터대학, 기타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임.
  - 이 중 자체 강사의 확보가 가능한 기관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정원임. 농촌진흥기관에는 농업경영을 담당하고 있는 연구사와 지도사가 중앙 및 지방에 고루 배치되어 있음. 이들을 전문 강사로 양성할 경우 자체 강사 및 컨설턴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이 때 회계에 익숙하지 않은 경영담당자들을 위해 기초회계부터 단계별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설해야 할 것임. 농정원은 현재 단식부기 기반의 경영장부를 지도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강사를 확보하여 지자체의 회계교육에 참여토록 하고 있음.



- 나머지 기관이나 단체들은 자체 강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농과계 대학 등 외부기관에 회계교육을 위탁하고 있는 실정임. 이 기관들이 개설하는 회계교육과정은 수강생들의 교육수준을 감안하여 단계별로 교육이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농촌진흥기관, 농정원, 외부기관이나 단체 등이 교육수준별로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개설할 수 있도록 수준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농업관련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예를 들어, 연차별로 기초농업회계반, 품목별 회계사례분석반, 회계프로그램 실무반, 재무회계컨설팅반, 농업경영컨설팅반 등으로 교육과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교육교재와 회계프로그램 매뉴얼을 제작하여 공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5). 각 기관은 메뉴방식으로 제시되는 교육과정을 보고 농업경영체의 수준에 맞게 단계별로 교육을 진행시킬 수 있을 것임.
- 이 때 모든 교육과정은 농업회계프로그램과 연계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이 모든 과정은 농촌진흥기관과 농정원이 역할을 분담하거나 한 쪽 기관에서 총괄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임. 어떠한 형태가 되었든 양 기관의 협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전문강사나 컨설턴트는 농업경영체가 수강해야할 과정들을 모두 이수하게 하며, 나아가 고급수준의 심화과정(예: 컨설턴트 재무회계과정, 컨설턴트 농업경영진단 및 설계과정 등)을 개설하여 심도있는 지식의 습득과 실습 훈련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임.
- 교육과정이 수준별로 제시되면, 교육대상자의 선정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하든지, 새롭게 교육대상자를 기관별로 배분하든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그림 IV-5> 농업회계 교육과정 개설 예시

- 현재, 경북농업기술원에서는 수년에 걸쳐 농업회계프로그램에 기반하여 체계적으로 농업회계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또한, 충북농업기술원에서도 자체 회계프로그램에 기반한 농업회계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몇 개의 지자체와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업회계교육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 리더과정으로 운영 중에 있음. 초급과 중급과정은 각 2일, 고급은 1일 과정으로 운영됨. 그리고 리더과정은 총 6회(6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전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표 IV-2> 경북농업기술원 농업회계교육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초급과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회계의 기초 이론과 실습</li> <li>•농업회계와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활용</li> <li>•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FAAS) 사용방법</li> <li>•교육생의 자산, 거래자료 등 입력 실습</li> </ul>
중급과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회계의 기본원리</li> <li>•원가회계의 이해와 실습</li> <li>•원가회계와 농업경영체기록분석시스템 활용</li> <li>•FAAS에서 원가회계 실습</li> </ul>
고급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기록을 활용한 농업경영분석</li> <li>•농업회계자료를 이용한 의사결정</li> <li>•농장자료를 활용한 경영분석 실습</li> </ul>
리더과정	1회(1일) 2회(1일) 3회(1일) 4회(1일) 5회(2일) 6회(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회계의 이해</li> <li>•농업회계원리 I (회계원리와 계정과목 등)</li> <li>•농업회계원리 II (자산, 부채, 자본의 회계처리 등)</li> <li>•농업회계원리 III (결산, 재무제표 작성 등)</li> <li>•원가회계 및 현장실습</li> <li>•시스템 활용법 및 수료식</li> </ul>

- 충북농업기술원은 농업회계교육과정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누어 운영 중에 있음. 초급과 중급과정은 각 2일, 고급은 1일 과정으로 운영되며, 농업소득분석, 농업회계프로그램, 농업회계, 농업세무에 대한 교육이 병행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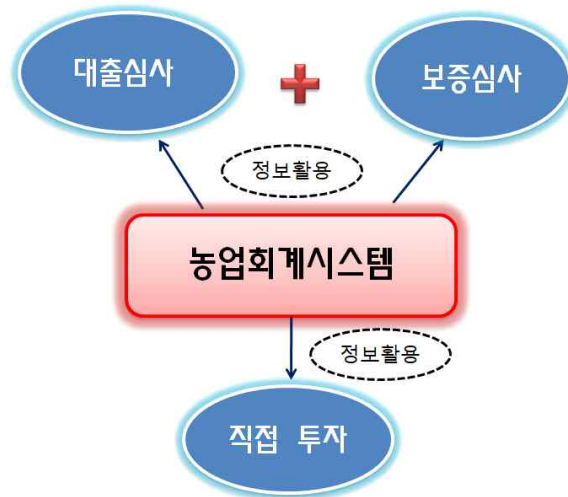
<표 IV-3> 충북농업기술원 농업회계교육과정

과정명	기간	교육내용
초급과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분석</li> <li>•농업회계프로그램 1(모바일 어플리케이션)</li> <li>•농업세무 초급(기초세무)</li> <li>•농업회계 초급(회계기초)</li> </ul>
중급과정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분석</li> <li>•농업회계프로그램 1(Web 버전)</li> <li>•농업세무 중급(세무신고)</li> <li>•농업회계 중급(법인회계)</li> </ul>
고급과정	1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농업소득분석</li> <li>•농업회계프로그램 1(회계처리사례)</li> <li>•농업세무 고급(세제지원)</li> <li>•농업회계 고급(재무정보 활용)</li> </ul>

## 라. 농업회계기록의 제도화

### 1) 대출 및 보증심사, 직접 투자 활용

- 대출 및 보증기관은 사전심사를 거친 다음 자금운용과 자금회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후적인 금융지도를 실시하고 있음. 금융기관들은 개별 경영체의 신용정보에 기초해서 개별 경영체의 금융정보 및 실물자산정보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반면, 실제 생산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산 및 소득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농업회계시스템이 일정한 기준에 의해 비교 가능한 회계정보를 일관성 있게 산출한다면, 금융기관 및 투자기관에서는 이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정확한 대출 및 보증심사, 투자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임.
  - － 금융기관에서는 회계시스템을 통해 산출된 자료를 제출하는 농업경영체에게 대출 및 보증심사 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회계기록의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인센티브는 대출 및 보증심사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보증한도를 조정하는 등 농업경영체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우대정책을 말함.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은 대출자금의 회수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농업경영컨설팅을 받은 경영체에게 차별화된 우대정책을 실시함으로써 농업경영체의 사업성과가 극대화되도록 유도할 수도 있을 것임(그림 IV-6).
  - －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모태펀드 + 민간자본 매칭’ 형태의 새로운 정책금융을 확대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식품경영체의 육성을 도모하고 있음. 직접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자료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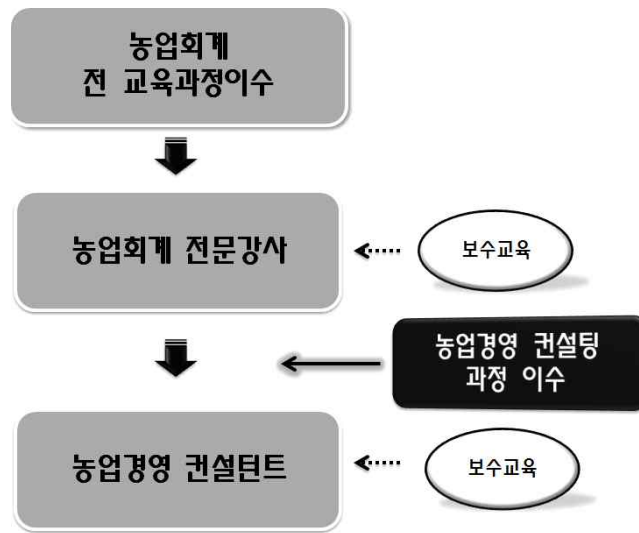


<그림 IV-6> 농업회계시스템의 대출(보증)심사, 직접투자 활용

## 2) 농업회계 전문강사제 및 농업경영 컨설턴트제 도입

- 농업회계교육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을 이수한 강사를 전문강사로 임명하고 각 기관에 명단을 배포하여 교육강사로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각 도 농업기술원 경영담당 연구사들을 대상으로 회계교육과정뿐만 아니라 농업경영 컨설턴트 과정까지 모두 이수하게 하여 이들을 교육강사 뿐만 아니라 전문 컨설턴트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그림 IV-7).
- 교육강사의 자격으로는 도 농업기술원 경영담당 연구사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 경영담당 지도사, 대학에서 (농업)회계학을 이수한 자, 민간 세무사 및 회계사 등으로 한정하거나 제한을 두지 않는 방법이 있음. 회계에 익숙한 세무사나 회계사의 경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외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농업회계 전문강사와 농업경영 컨설턴트에게는 필요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장, 농정위원장 등이 수여하는 인증서 또는 자격증을 부여함으로써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필요가 있음.

- 일정한 주기로 보수교육을 이수케 함으로써 새로운 정보의 획득과 교환, 변화하는 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토록 해야 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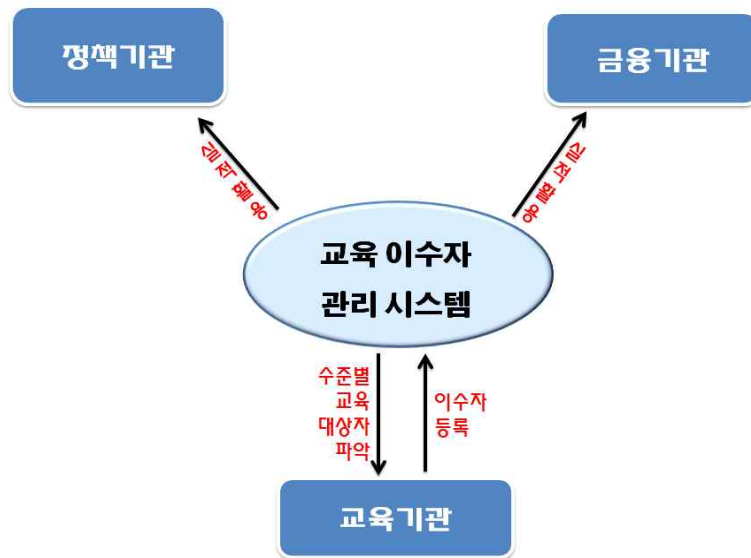
<그림 IV-7> 농업회계 전문강사 및 농업경영 컨설턴트 육성 흐름도

### 3) 교육이수자 관리

- 교육기관에 상관없이 농업회계교육 이수자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으로써 단계별 교육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그림 IV-8).
  - 교육과정이 단계별로 진행되기 때문에 각 과정별로 선수과목을 지정하고,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이수자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할 것임. 경북도 농업기술원의 수준별 교육이수자 관리가 좋은 사례가 될 것임.
  - 교육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을 경우 동일한 수준의 교육과정을 재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수준이 뛰어난 농업경영체의 경우 선수과목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전문강사의 인정 하에 다음 단계의 교육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신축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 교육과정을 이수할 때마다 교육 이수증을 부여함으로써 자긍심을 부여하고, 정책목적이나 대출목적으로 교육이수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육이수자관리 시스템의 등록내용으로 대체함으로써 서류작성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개인정보의 누출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개인별로 자신의 교육이력을 출력하게 하여 제출하는 방법도 좋을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는 통합 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교육이수실적의 입력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입력정보의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이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하여 회계교육 이수자가 수준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 IV-8> 교육이수자 관리시스템 운영도

#### 4) 지자체별 경영진단 및 컨설팅 의무화

- 지자체별로 농업회계시스템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의 DB자료에 대한 검증 및 분석, 진단 및 컨설팅을 의무화하여 농업경영개선에 활용해야 할 것임(그림 IV-9).
  - － 이는 농업경영체의 교육이수 및 회계시스템 가입, 자료 입력, 자료 검증, 자료 분석, 경영분석, 진단 및 컨설팅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필요로 함. 매년 DB가 축적됨에 따라 지자체 정책사업의 기획, 평가, 진단, 환류 등의 과정이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임. 또한 농업회계자료의 활용방안 등에 대한 연구 용역을 통해 유용한 자료를 도출하고 경영개선방안 등을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음.
  - － 매년의 실적을 토대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회계기록 및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이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이 때 실적의 평가는 양적 평가보다는 질적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여 심도 있는 컨설팅과 체계적인 관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 경영진단 및 컨설팅 대상자는 자발적 참여를 원칙으로 하는 회원제로 운영함으로써 초기부터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음. 이는 무분별한 실적 위주의 컨설팅을 지양하고 농업회계의 유용성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농업회계기록을 확대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지자체별, 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회원의 모집을 위한 홍보 활동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 컨설팅을 의무화하는 것과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회원제 간에 상충되는 면이 있으나, 의무에 양적 제한을 두지 않거나 단계별로 회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 컨설팅 외에 정부의 농업경영체 등록제와 연계가 의무화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농업회계자료의 입력이 확대될 경우 자료의 검증이 의무화될 수 있음. 이 경우 농업회계 및 농업전반에 걸쳐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농업경영컨설팅트를 중심으로 자료 검증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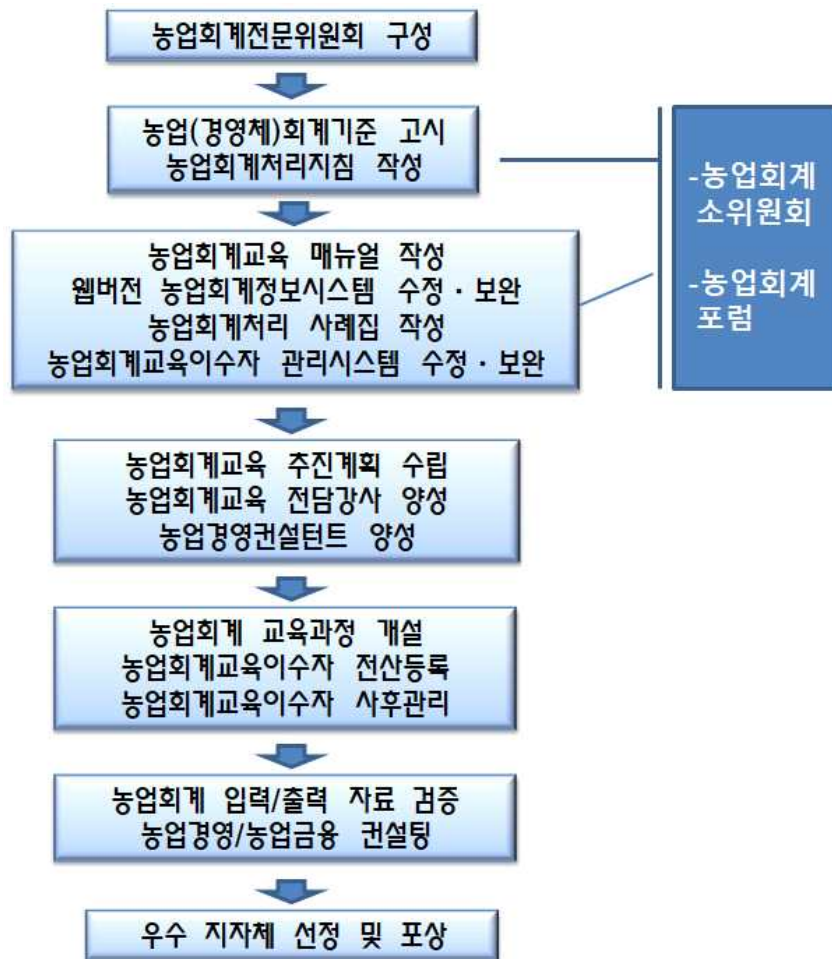




<그림 IV-9> 농업회계시스템의 농업경영진단 및 컨설팅 활용방안

마.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농업회계기록 확대를 위한 업무 흐름도

- 이상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중심으로 농업회계기록의 확대를 위한 일련의 업무 과정을 흐름도로 정리하면 <그림 IV-10>과 같음.



<그림 IV-10> 농업(경영체)회계기준 보급 및 확대를 위한 업무 흐름도

## 참고문헌

- 권오옥, “축산회계의 계정과목 설정에 관한 연구”, 「농업정책연구」, 19(2):77-91, 1992.
- 김성섭 · 하지희 · 정효재 · 서상택, 6차산업 농가의 회계처리단위와 원료의 매입기준 설정 연구, 「한국협동조합연구」, 35(1): 1-16, 2017.04.
- 김정주, 「농업경영 회계처리기준 설정」, 농촌진흥청, 2004.
- 김태용 · 오형석 · 이상혁 · 박은영, 「농업경영체의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연구」, 미래회계법인, 2004.12.
- 노미현, “농업회계에 관한 회계처리기준 검토와 비교 연구”, 「국제경상연구」, 5(4): 105-128, 2008.
- 농림부, 「농장회계길라잡이(농업회계처리모범(례)해설)」, 2007.
- 농협중앙회 농업금융부, 「2007 농업종합자금대출업무가이드」, 2007.
- 명수환 · 여민수 · 홍승지, “후계농업경영인의 농업경영회계기록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 · 정책연구」, 44(3): 612-637, 2017.09.
- 박계원, 「원예작물 회계처리 사례」,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2015.
- 방윤정 · 이상래, “농업회계기록 실태와 활성화 방안”, 「농업경영 · 정책연구」, 45(2): 276-290, 2018.06.
- 서상택, 「식량(특용)작물 회계처리 사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5.12.
- 서상택 · 전익수 · 김성섭 · 정우석 · 박부용, 「농업회계기준 수립 및 보급방안 연구」,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11.
- 양병우 · 이영만, “농업경영조직과 회계정보시스템에 관한 소고”, 「농업생명과학연구」, 39(2): 21-28, 2005.
- 이승형, “농업회계정보시스템의 개발에 관한 연구”, 「농업생명과학연구」, 29: 142-152, 1998.
- 이영만, “농업경영분석을 위한 농업부기이용의 한계”, 「농업경영 · 정책연구」, 29(4): 612-626, 2002.12.
- 이영만, “농업회계기준의 표준화 방향에 관한 연구”, 「농업경영 · 정책연구」, 30(2): 270-283, 2003.06.
- 이영만, “농업부기 및 회계체계의 설정방안”, 「농업경영 · 정책연구」, 31(4): 634-639. 2004.12.
- 이상래 · 이철희 · 정병우 · 윤석곤 · 서상택, “농가 회계기록 활성화를 위한 농업회계 가이드라인 개발”, 「농업경영 · 정책연구」, 42(2): 185-216, 2015.06
- 이희숙 · 김상옥 · 박상현 · 오명륜 · 김종태, “소규모 농가의 영농의사결정지원을 위한 재무정보

시스템 설계 및 구현”, 『Journal of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tion & Management』, 13(1):  
149-166, 2006.

최세현 · 이상학 · 하현정 · 노수정 · 김선련, 「농업경영기록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2012.

최칠구외, 「축산분야(한우, 양돈, 양계) 회계처리 사례」, 농촌진흥청, 2016.11.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농업회계 확대방안」, 2014.9.

한두봉 · 서상택, “농업재무제표에 관한 소고”, 『생명자원연구』, 9:77-87, 2001.